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배경

- '97. 7. 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99. 2. 5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어 경찰관서에서 운영하여 오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므로,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
- 지정기준 및 대상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기타 청소년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등으로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우려되는 지역
-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 : 24시간(보호자 동반 시 예외)
-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 : 하오 7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보호자 동반시 예외)
-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사항 신설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 및 동시행령 제19조의 3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 조례안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의 조항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탈선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며,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